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8599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안○○
피 고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최○○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6,815,940원(가산세 38,218,140원 포함), 지방교육세 11,408,250원(가산세 1,242,7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605,490원(가산세 828,48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의 주지인 B은 2014. 8. 22. ○○ ○○구 C 과수원 7584.2㎡ 및 D 전 1215.8㎡(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B 앞으로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4. 6.경 B과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무렵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2020. 4. 1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녹지지역, 공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인데, ○○특별시 소재 농지는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6. 16. 피고에게 원고와 B이 2020. 5. 10.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증여 해지합의서'를 첨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2020. 5. 10. 합의해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1) 원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4. 4. 19.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라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신고서'(이하 '이 사건 계약해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1. 9. 8.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별시장은 2021. 11. 10.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21.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156,815,940원(가산세 38,218,140원 포함), 지방교육세 11,408,250원(가산세 1,242,7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605,490원(가산세 828,48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징 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위 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기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 사유 해당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법문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바, 이를 두고 유상·무상의 소유권 이전행위를 뜻하는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사실상의 재증여로서 위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법문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이상,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징 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그 취득의 원인행위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명백히 밝혀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는 2021. 6. 16.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2020. 5. 10. 합의해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해제신고서에 첨부된 '증여 해지합의서'의 작성 일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징 사유 중 특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